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63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 김우영·김문수·송재봉

박민규・윤종군・김 윤

이재강 · 김남희 · 최민희

양문석 · 노종면 · 황정아

정동영 · 조인철 · 박해철

채현일 • 박주민 • 이정헌

김 현 • 한민수 • 조계원

김성환 • 이훈기 • 이광희

임미애 의원(25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사 및 집행기관(사장·감사·부사장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보도 ·제작·편성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 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보도·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공사 소속 직원, 방송통 신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 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 마. 사장의 면직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46조제9항 단서 신설).
- 바.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안 제46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 사.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안 제46조의2 신설).
- 아. 이사회의 기능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시청자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 자.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 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 차. 이사 및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 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53조의 2 신설).
- 카.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시청자위원 구성의 객 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함(안 제87조제1항).
- 타. 이사 또는 집행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업자가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 회의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안 제1 06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에 의해 고용되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사장, 부사장, 감사 등 임원 또는 집행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放送프로그램製作"을 "방송프로그램 보도·제작·편성"으로, "취재 및 製作 종사자"를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보도·제작·편성 종사자"로,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를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로 하며, 같은 조에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1.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2. 방송사업자와 종사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 3. 방송프로그램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 ②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 ③ 편성위원회의 위원은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보도·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 또는 개정과 그 준수사항 이행 여부
-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 제46조제2항 중 "11人"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분야"를 "제46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 각 분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제2호 중 "개인"을 "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을 제외한 개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대통령은 제46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지역총국과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 4. 공사 소속 직원이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 5.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사람 2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는 자는 이사 추천을 위한 기구의 구성, 공개절차를 통한 이사 후보 모집, 심사절차, 의견수렴 등이사 추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투표의 방식(전자투표 등을 포함한다), 선거인 명부, 투표일정, 투표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면직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 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은 공사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③ 제1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있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 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4. 방송·언론 관련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제47조제1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임·직원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장의 임면제청

7의2.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3.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50조제2항 전단 중 "任命"을 "임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

장은"을 "사장의 임명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提請하는"을 "임면제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은 사장의 임기만료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⑧ 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 회"라 하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평가위원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일 8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⑦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여 행정 적·재정적 지원(인건비 등 운영비용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 다.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⑨ 이사회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장후보자 공모, 응모자의 주요경력 및 업무수행 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 응모자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0조의3(평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제50조의4(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후보자 선정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 대상 후보자를 선 정하여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날까지 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장후보자(이하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해당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는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 ④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사회가 제시한 사장 임명제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 공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4. 방송 관련 전문성
-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⑤ 평가위원회는 사장의 임기만료일 65일 전까지 평가대상 사장후 보자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를 대 상으로 면접심사를 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평가위원회가 제출 한 평가점수와 합산한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이 경우 각 후 보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점수를 최종 평가점수의 100분의 7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는 제6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최종 사

장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사회는 제46조제8항 본문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수의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사장후보자를 결정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상 사장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방법 및 효력, 최종 사장후보자의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53조의2(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이사 및 집행기관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이사 및 집행기관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이사 및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3.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대한 경우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

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사의 소관 직무와 관련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제8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계"를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視聽者委員會"를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추천기준 등을 포함한 시청자위원회"로 한다.

- 4.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업자
- 이 경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로부터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야 한다.
- ③ 시청자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고 방송사업자의 내·외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을 추천받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6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방해하거나 방송편성규약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편성 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 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 1의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 1의5.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 제46조제11항을 위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제46조제12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9.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사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 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사장을 포함한 집행기관은 이 법에 따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u><신 설></u>	28.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에
	의해 고용되어 방송사업에 종
	사하는 자 중에서 사장, 부사
	장, 감사 등 임원 또는 집행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를 말한다.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	③ <u>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u>
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	<u>방송편성책임자</u>
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	
야 한다.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4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	
는 <u>放送프로그램製作</u> 의 자율성	<u>방송프로그램</u> 보도·제작
을 보장하기 위하여 <u>취재 및</u>	<u>• 편성</u>
<u>製作 종사자</u> 의 의견을 들어 <u>放</u>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

公表하여야 한다.

<신 설>

- 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원회가 방송프로그램 보도 제 작・편성 종사자-------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 <u> 규약을 공표----</u>.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와 종사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종합편성 또는 보도전 문편성 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 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종합 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 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 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두 어야 한다.
 - 1. 방송편성규약의 제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2. 방송사업자와 종사자의 방송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 3. 방송프로그램 보도 · 제작 · 편성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②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第17條(再許可 등) ①・② (생 第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再 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 5의2. (생 략) <u><신 설></u>

<신 설>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
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편성위원회의 위원은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보도ㆍ제작
•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
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u>다.</u>
917條(再許可 등) ①·② (현행
과 같음)
3
<u>.</u>
1. ~ 5의2. (현행과 같음)
<u>6.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u>
방송편성규약 제정 또는 개정
과 그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

<u>부</u>

- 6. (생략)
- ④ (생 략)
-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략)
 -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 ②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후단 신설>

<신 설>

- 8.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등) ① (현행과 같음)
- ----13명-----.
- ③ -----제46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 각 분야---------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 된 사람을-----이 경우 대통령은 제46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48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 된 것으로 간주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3 명. 이 경우 국회 의결을 거 쳐야 한다.
 - 2.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 원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에 해당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방송통 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지역총국과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 람 2명
- 4. 공사 소속 직원이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람 3명
- 5.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사 람 2명

① 제3항 각 호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는 자는 이사 추천을 위한 기구의 구성, 공개절차를 통한 이사 후보 모집, 심사절차, 의견수렴 등 이사 추천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3항제4호에 따른 투표의 방식(전자투표 등을 포함한다), 선거인 명부, 투표일정, 투표관

④ ~ ⑥ (생 략)

⑦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단서</td>신설>

⑧ (생략)

-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생략)
- 2. 공개하면 <u>개인</u>·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

<u><신 설></u>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u>가 정한다.</u>
$\underline{6}$ \sim $\underline{8}$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u>⑨</u>
다만, 제
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면직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현행 제8항과 같음)
<u> </u>
1. (현행과 같음)
2
행기관을 제외한 개인
3.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
여야 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은

<신 설>

- <u>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u> 개한다.
- ① 제1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 제4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 다.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 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 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 ·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 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 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사람
 -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 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第47條(理事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 6. (생략) <신 설>

② (생략)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관련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第47條(理事의 任期) ① ------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 7.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 송공사의 이사 또는 종합편성 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 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임ㆍ직 원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 |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 1. ~ 6. (생 략)
- 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

<신 설>

<u><신</u> 설>

8. ~ 15. (생략)

② (생략)

第50條(執行機關) ①(생 략)

- ② 社長은 理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u>任命</u>한다. 이 경우 <u>사</u> <u>장은</u>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야 한다.
- ③ 理事會가 제2항에 따라 社 長을 <u>提請하는</u> 때에는 그 提請 基準과 提請事由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u>④</u> ~ <u>⑥</u>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7. 사장의 임면제청
7의2.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
장 임명동의
7의3.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
8.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50條(執行機關) ① (현행과 같
음)
②
임면

<u>장의 임명은</u>
③
<u>임면제청하는</u>
<u>.</u>
④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사
장 임명제청은 사장의 임기만
료 5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신 설>

는 제46조의2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의2(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 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 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평가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 상 200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절차를 통한 평가위원 모집 등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와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보 장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일 80일 전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사회 가 최종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의결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 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하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①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원 활한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하 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인건 비 등 운영비용 지원을 포함한 다)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 행정적·재정 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⑨ 이사회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사장후보자 공모, 응모자의 주요경력 및 업무수행 계획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각 응모자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0조의3(평가위원회 위원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위원 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 <u>설></u>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 니한 사람
- 2. 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
- 3.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u> 견인
- 제50조의4(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후보자 선정 등) ① 이사회는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여부 등을 심사하여 평가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날까지 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장후보자(이하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라 한다)의 인적사항과 해당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는 평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한다.
 - ④ 평가위원회가 평가대상 사 장후보자를 평가할 때에는 이

 사회가 제시한 사장 임명제청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 익성에 관한 실천 의지
- 2. 시청자 주권 및 지역성 실현에 대한 공헌도
- 3. 정치적 중립성
- 4. 방송 관련 전문성
- 5.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⑤ 평가위원회는 사장의 임기 만료일 65일 전까지 평가대상 사장후보자에 대한 최종 평가 점수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 ⑥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평가대상 사장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평가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점수와합산한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와로 한다. 이 경우 각 후보자에대하여 평가위원회가 제출한평가점수를 최종 평가점수의 100분의 70 이상 반영하여야 한

다.

① 이사회는 제6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최종 사장후보자로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46조제 8항 본문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8 제6항에 따른 최종 평가점 수의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점 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사장후 보자를 결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상 사장후보자 선정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방법 및 효력, 최종 사장후보자의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53조의2(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이사 및 집행기관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 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이사 및 집행기관은 정치활 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이사 및 사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 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3.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공사의 소관 직무 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다음 각 第87條(視聽者委員會)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放

送事業者는 視聽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 를 두어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 는 者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 칙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 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 촉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③ <u>視聽者委員會</u>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
<u>방송사업자</u>
②
- <u>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u>
이 경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로부
터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추천
<u>받아야 한다.</u>
② 지원기이이치는 고객원기
③ 시청자위원회는 공정하고
<u>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성하</u>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성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성하 여야 하고 방송사업자의 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성하 여야 하고 방송사업자의 내· 외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성하 여야 하고 방송사업자의 내· 외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을 추천받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성하 여야 하고 방송사업자의 내· 외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을 추천받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106條(罰則) ① 다음 각 호의 第106條(罰則)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 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신 설>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 1의2. ------여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한 者

<신 설>

<신 설>

<신 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편성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 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 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방해하거나 방송 편성규약을-----

- 1의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 니한 자
- 1의4.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편성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 1의5.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편성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제46조제11항을 위반하여 회
	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8. 제46조제12항을 위반하여 회
	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9.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